

인천광역시 조례 (공 포)

□ 제 명 :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조례

□ 개정사유

- 민선 6기 첫 번째 조직개편과 관련한 「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가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와 사무를 개편된 조직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었고,
- 현행 조례 제27조 제3항의 규정은 의원의 직업과 관련이 있는 상임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, 변호사들의 자문 결과 이는 의원의 공무담임권을 법률이 아닌 조례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으로 위헌소지가 있다하여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는 대변인, 감사관, 투자유치단(투자유치 사무 제외), 민원소통담당관, 규제개혁추진단, 기획조정실, 재정기획관, 행정관리국 및 관련 사업소로 함.(제26조제2항제2호가목)
-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는 보건복지국, 여성가족국, 문화관광체육국 및 관련 사업소로 함.(제26조제2항제3호가목)
-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는 투자유치단(국제협력 사무 제외), 경제산업국, 환경녹지국 및 관련 사업소로 함.(제26조제2항제4호가목)
-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는 도시관리국, 건설교통국, 해양항공국 및 관련 사업소로 함.(제26조제2항제5호가목)
- 직업과 관련이 있는 상임위원회 위원의 자격제한 규정을 삭제함. (제27조제3항)

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인 천 광 역 시 장 유 정 복

2014년 12월 31일

인천광역시조례 제5417호

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2항제2호가목 중 “대변인실, 감사관실, 교육기획관실, 규제개혁추진단, 국제협력관실, 소통기획관실, 기획관리실, 안전행정국”을 “대변인, 감사관, 투자유치단(투자유치 사무를 제외한다), 민원소통담당관, 규제개혁추진단, 기획조정실, 재정기획관, 행정관리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“문화관광체육국,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”를 “문화관광체육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“경제수도추진본부”를 “투자유치단(국제협력 사무를 제외한다)”, “경제산업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“도시디자인추진단, 건설교통국, 도시계획국, 항만공항해양국”을 “도시관리국, 건설교통국, 해양항공국”으로 한다.

제27조제3항을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